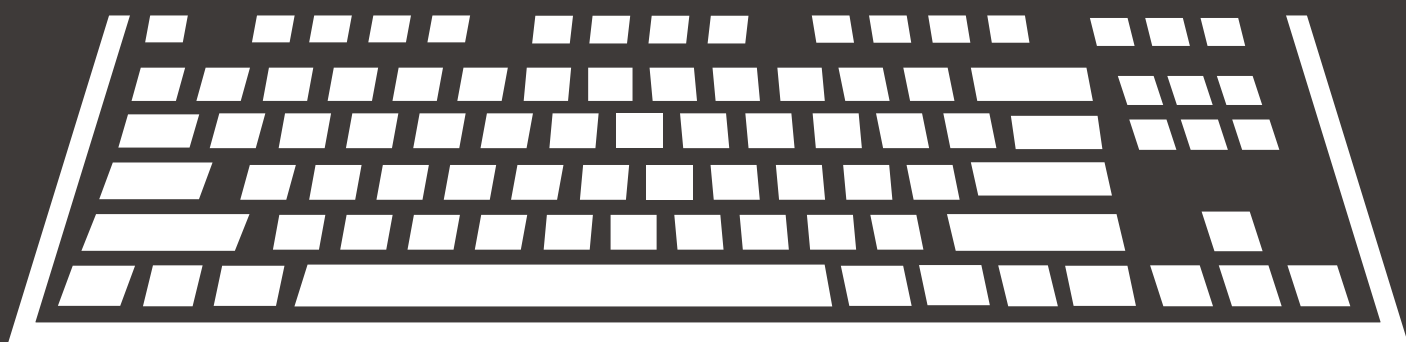


밤말은 국정원이

낮말은

방심위기가?



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
사이버 명예훼손 심의규정을
개정한다는데...

원래 명예훼손 게시물은 당사자가 신고해야 방심위가 심의를 했어요

"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 침해와 관련된 정보는
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"

-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10조 제2항



당사자

이 게시물이
내 명예를 훼손하고 있어요.
방심위에서 심의해서
차단하거나 삭제해주세요!

그런데 방심위가 규정 자체를 없애려고 해요

**그러면 이제 누구든지
다른 사람의 명예가 훼손당했다고 신고할 수 있어요**



제3자

이 게시물이 우리 회장님(대통령, 목사님...)의
명예를 훼손하고 있어요. 삭제해주세요!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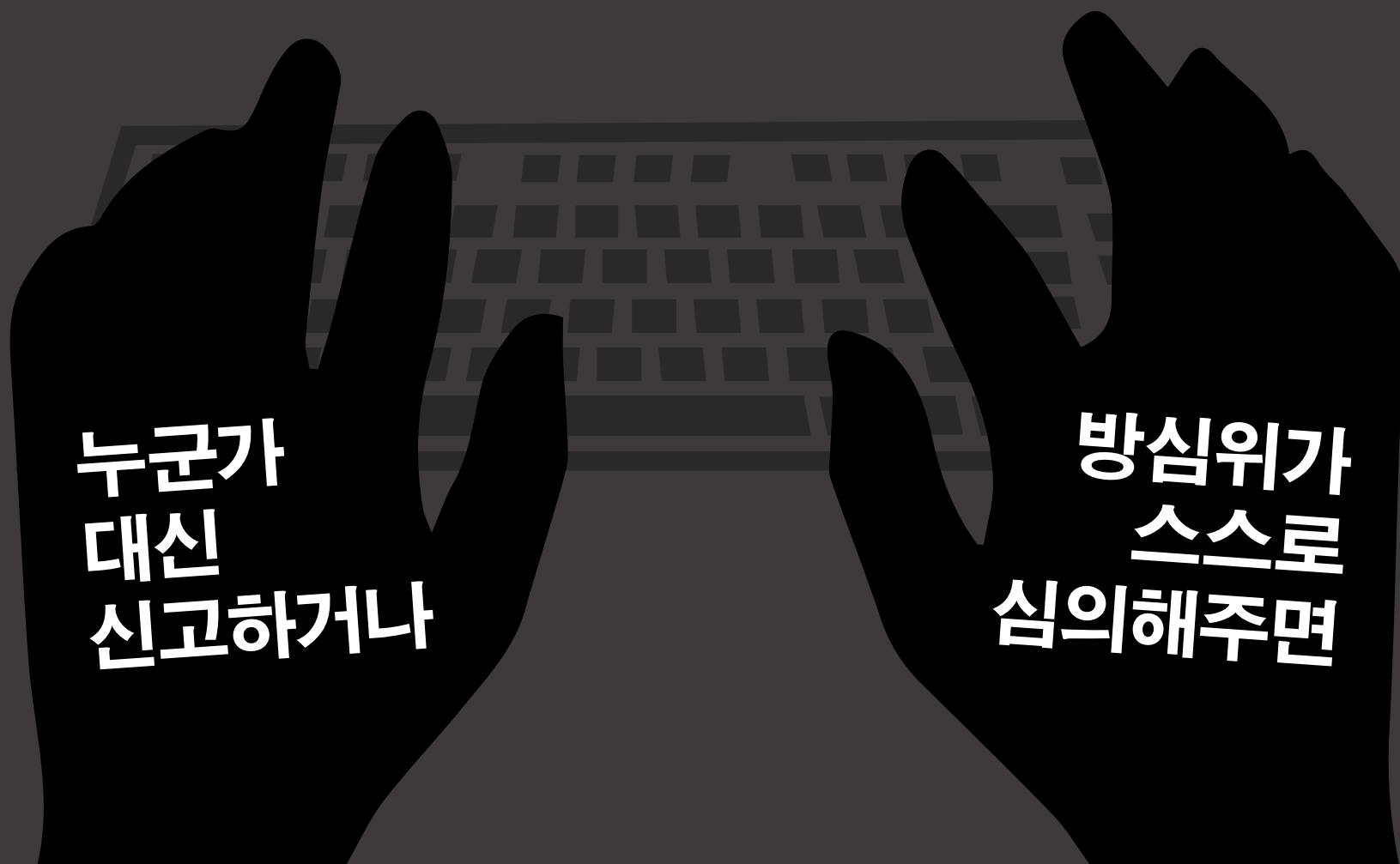
**심지어 방심위 직권으로
삭제할 수도 있어요**

흠... 이 글은 아무래도
'그 분'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 같군.
우리가 알아서 삭제하는 게 좋겠어.



이렇게 심의규정을 개정하면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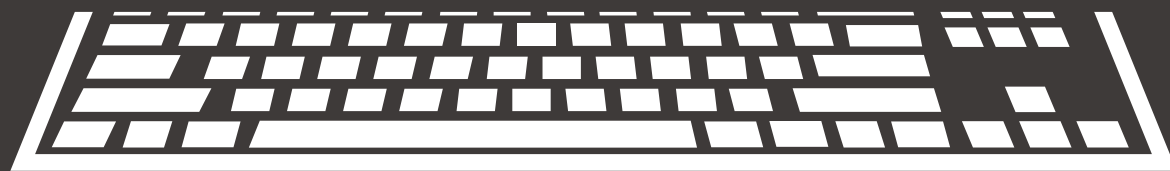
정치인, 고위 공직자, 재벌총수, 유명 종교인들 처럼
자신의 명예훼손 게시물을 일일이 직접 신고하기 꺾끄러운 분들은...



체면을 지키면서도
자신에 대한 비판글들을
인터넷에서 사라지게 할 수 있죠

인터넷을 매일 사용하는 우리는?

- 내가 '그 분'에 대한 비판적 글을 올려도
- 모 회사 제품이 문제가 있다고 제품후기를 올려도
- 000 후보에 대해 의혹제기 신문 기사를 캡처해도
- 메르스 대응 등 정부정책 실패에 대해 책임을 물어도
- 국정원 해킹구입 의혹 제기 블로그 글을 올려도
- 이승만 박정희 전직 대통령에 대한 UCC를 올려도...



명예훼손의 직접 당사자 아닌 제3자가 신고하거나
상시적인 모니터링 하는 방심위에 의해

삭제, 차단될 수 있습니다

참여연대는 반대합니다

지난 7월 9일 방심위 일부 위원들의 반대로 안건 상정을 못했지만
조만간 다시 개정안을 통과시키려는 시도가 진행될 것입니다

방심위는

당사자 신고 없이도 명예훼손
게시물을 심의·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

정보통신 심의규정 (제10조 제2항)
개정 시도를 중단해야 합니다